

# 장애인일자리(일반형)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11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1. .  
제안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장애인 일자리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동의 받도록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장애인일자리(일반형) 사업 지원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
  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
  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(의회의 동의)
  -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
- 필요성
  - 장애인 고용 및 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력 효율적 배분
  - 직업 적응 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고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연계 용이
  - 사업기간 중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 고용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 기회 제공

#### 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규모 : 전일제 3명 \*사업운영 평가 후 연차별 위탁규모 확대 예정
- 위탁사무
  - 사업계획 수립 및 장애인일자리(일반형) 참여자 모집, 선발, 관리
  - 배치기관, 참여자 등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등록, 관리
  - 임금 지급 및 예산 관리, 성과평가 등

#### 라. 민간위탁기간 : 2026. 1. 1.~2028. 12. 31.(3년)

#### 마. 수탁자 선정방식
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수탁자격 :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, 장애인단체, 비영리법인 등
- 선정기준
  - 위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의지
  -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등

#### 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위탁예산 : 93,028천원/연 \*2026년 장애인일자리 지원단가 기준
  - 인건비 : 3명 × 2,156,880원 × 13월(퇴직금 포함) = 84,118천원
  - 운영비 : 3명 × 247,500원(사용자부담금 등) × 12월 = 8,910천원

#### 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(제4조의2)

- 다른 사무방식의 수행 가능성
  -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직무개발과 취업 연계 등 효율적으로 일자리 제공 및 관리 가능
-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-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정기적인 지도·감독으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

○ 성과 측정의 용이성

- 민간위탁 계약 시 성과지표와 관리·평가 체계 설정

○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- 수탁기관 선정은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 예정
- 매년 사업평가 등을 통해 투명한 관리·운영 가능

아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평창군 장애인일자리 현황

(단위: 천원, 명)

구분	계	일반형		복지형	특화형
		전일제	시간제		
예산현황	1,207,101	661,628	135,334	372,296	37,843
지원인원	74	22	8	42	2

- 근무유형 : 전일제(주 40시간), 시간제(주 20시간), 복지형(월 56시간)
- 인건비 : 전일제(2,096천원), 시간제(1,048천원), 복지형(561천원)
- 사업내용 : 환경도우미, 우편물 분류, 주차 관리, 행정도우미 등
- 주요 배치기관
  - 전일제 : 우체국, 복지관, 건강증진센터, 장례식장, 곰두리광고, 공공시설 등
  - 시간제 : 장애인복지센터, 우체국, 금송회관 등
  - 복지형 : 읍·면사무소, 복지회관, 체육관, 지역자활센터, 도서관, 시네마 등
- 특화형 : 시각장애인 안마사, 주25시간, 인건비 1,313천원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21조(직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, 직업능력 평가, 직업 적응훈련, 직업훈련, 취업 알선,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
### □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
제13조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,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# □ 「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」

#### 3-8.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

##### 가. 사업유형별 사업수행기관

사업유형		사업수행기관	
		지자체 직접수행	민간수행기관
일반형 일자리	전일제 시간제	○	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, 장애인단체, 비영리법인 등

## 나. 사업수행기관 모집

- 1)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는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
  - 지자체별 일자리 배정인원, 기존 수행기관 수행 규모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정 민간 수행기관 선정·관리
- 2)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
  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, 배치기관 연계협약서(해당기관에 한함) 각 1부

## 다.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

- 1)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는 민간수행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, 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담당인력 유무 등을 고려, 민간수행기관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선정
- 2) 수행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되, 지자체별 상황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수 있음
- 3)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청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거나 공문으로 통보
- 4)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청장은 선정된 민간수행기관장과 사업 협약서 작성 및 협약 체결
- 5)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청은 수행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배치기관 확보의 적절성, 담당인력 투입의 적절성, 일자리배정인원 참여율,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성과평가 실시